

현·시정촌 연계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 협력금·지원금

신청 접수 요항

【접수 기간】

2020년 5월 7일(목)부터 5월 22일(금)까지

※5월 22일(금) 소인까지 유효

【접수 방법】

1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일본어로 써주십시오.

신청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간이 서류 등 우편물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宛先) (주소) 〒380-8570

長野市大字南長野字幅下692の2

長野県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拡大防止協力金等」受付担当 あて

※우표를 붙이고 뒷면에는 발신인의 주소 및 서명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참을 통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 신청 서류 입수 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나가노 현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URL)

<https://www.pref.nagano.lg.jp/sansei/sangyo/shokogyo/covid19kyoryoku.html>

※다운로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 지역진흥국 상공관광과 또는 각 시정촌 관공서 접수 창구 또는 상공담당과로

【문의처】

4월 30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 요청 · 협력금 등에 관한 문의

전화 번호 : 092-687-7890

접수 기간 : 오전 7시~오후 10시(토, 일, 공휴일도 개설)

5월 7일 이후

■협력금 신청에 관한 문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방지 협력금 등> 접수 담당

전화 번호 : 092-687-7890

접수 기간 : 오전 9시~오후 5시(토, 일, 공휴일도 개설)

나가노 현 산업 노동부

현·시정촌 연계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 협력금·지원금 신청 접수에 대하여

2020년 4월 30일

I 협력금 등의 개요

1 취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나가노현에서 실시한 긴급사태조치와 함께 휴업 요청 등에 협력해주신 사업자분들께 시정촌과 협력해 현·시정촌 연계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 협력금·지원금(이하 '협력금 등'이라 함)을 지급합니다.

이 협력금 등은 원칙적으로 4월 24일(금)부터 5월 6일(수)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협력해주신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지급액

한 사업자 당 30만엔(1회 한정)

※ 협력금,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양쪽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 사업자 당 30만엔**

※ 내역 : 현 20만엔, 주된 사업소에 있는 시정촌 10만엔(현과 시정촌의 협조사업)

II 지급 대상자

1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 협력금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 24조 제 9항에 근거한 현의 요청에 협력하여, 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휴업(이하 '사용 중지'라 함)한 이하의 사업자

① 현 내에 유희 시설 등, 운동·유희 시설, 극장 등을 소유, 해당 시설을 사용 중지한 사업자

② 현 내에 식사 제공 시설을 소유, 해당 시설의 영업시간 단축과 술 제공시간을 제한한 사업자(종일 시설 사용을 중지한 사업자를 포함)

(주) '영업시간 단축'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사이의 영업 휴무, '술 제공시간의 제한'은 오후 7시까지의 제한으로 합니다. (택배, 테이크 아웃은 제외)

※ 통상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영업시간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금

현 내에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전시 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소유,

현의 휴업검토 요청에 협력해 해당 시설을 휴업(이하 '휴업'이라 함)한 사업자

※ 현 외에 부사가 있는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Ⅲ 지급 조건

협력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1 현 내에 사업소를 소유, 2020년 4월 22일(수) 이전에 별지 표 1에 해당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
- 2 사용 중지의 원칙상 조건은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소를 2020년 4월 24일(금)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전체 기간 내내 사용 중지할 것.
- 3 음식점, 카페 등의 식사 제공 시설은 요청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의 영업을 휴무하고, 술 제공은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할 것.
- 4 지원금 대상 시설이 되는 '체험 시설'은 주된 목적이 관광 목적 이용일 것.
- 5 신청 사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용자 그 외의 종업원, 구성원이 나가노현 폭력단 배제 조례 2조에 규정하는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또한 상기의 폭력단, 폭력단원 및 폭력단 등의 반사회적인 세력이 신청사업자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지 않을 것.

Ⅳ 신청 절차

1 신청 서류

별지 표 2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신청 서류의 입수 방법

· 나가노 현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URL) <https://www.pref.nagano.lg.jp/sansei/sangyo/shokogyo/covid19kyoryoku.html>

※ 다운로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 지역진흥국 상공관광과 또는 각 시정촌 관공서 접수 창구 또는 상공담당과로

3 신청 접수 기간과 방법

(1) 접수 기간

2020년 5월 7일(목)부터 5월 22일(금)까지

(2) 접수 방법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으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 서류 등 우편물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2020년 5월 22일(금)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주소) 〒380-8570

長野市大字南長野幅下692の2

長野県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拡大防止協力金等」受付担当

※우표를 붙이고 뒷면에는 발송인의 주소 및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송료는 신청자 측의 부담입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지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4 협력금에 관한 문의처

신청에 관한 질문은 다음의 전용 상담 창구로 상담해 주십시오.

4월 30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 요청 · 협력금 등에 관한 문의

전화 번호 : 092-687-7890

접수 기간 : 오전 7시~오후 10시(토, 일, 공휴일도 개설)

5월 7일 이후

■협력금 신청에 관한 문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방지 협력금 등> 접수 담당

전화 번호 : 092-687-7890

접수 기간 : 오전 9시~오후 5시(토, 일, 공휴일도 개설)

5 협력금 지급

신청 서류를 수령한 후 내용을 심사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력금을 지급합니다. 5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6 통지

심사 결과 협력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지급 예정일이 기재된 통지를 발송합니다. 배달 상황에 따라 통지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좌이체 불가능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 예정일에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협력금의 미지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차후에 심사결과를 발송하여 알려드립니다.

V 그 외

1 협력금 지급이 결정된 후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나 부정이 발각된 경우에는 나가노현 보조금 교부 규칙(1959년 나가노현 규칙 제9호)에 따라 협력금 반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1의 경우 협력금 지급을 받은 사업자명, 대상 시설 등의 정보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 3 지출 사무의 원할·확실한 실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상 시설의 사업상황이나 운영 재개에 관한 검사, 보고 또한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4 신청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 확인 및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별지 표1

협력금 · 지원금 대상시설 일람

협력금 대상시설			지원금 대상시설 (주로 관광객 대상 시설)
시설 사용중지(휴업)			시설 사용중지(휴업)
1 카바레	16 실내·실외 수영장	31 야구배팅 연습장(*1)	51 문화홀
2 나이트클럽	17 볼링장	32 육상 경기장(*2)	52 박물관
3 댄스홀	18 스포츠클럽 등 운동시설	33 야구장(*2)	53 미술관
4 스낵 바	19 마장 가게	34 테니스장(*2)	54 과학관
5 바	20 파칭코 가게	35 축구장(*2)	55 기념관
6 다트 바	21 게임센터 등의 오락실	36 풋살장(*1,*2)	56 수족관
7 펍	22 스케이트장	37 궁도장(*1)	57 동물원
8 유흥업소(성 풍속점)	23 유도 검도장	시간단축 (음식 제공 시설)	58 식물원
9 어덜트 샵	24 핫요가 요가 교실	41 음식점	59 테마파크
10 넷카페	25 극장	42 요리점	60 유원지
11 만화카페	26 관람장	43 카페	61 골프장
12 가라오케 박스	27 영화관	44 일본식·서양식 과자점(*3)	62 체험시설(*도예, 유리공예, 캠프장 등)
13 사격장	28 연예장	45 이자카야	63 당일치기 온천 시설
14 라이브하우스	29 플라네타리움	/	64 호텔·여관(*주로 비즈니스 이용인 시설 제외)
15 체육관	30 골프 연습장(*1)		65 간이 숙박소, 민박(*산막 포함)

* 1 실내 시설에 한합니다.

* 2 객석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3 점내 식사 공간이 있는 시설에 한합니다.

신청 서류에 대하여

제출 서류와 유의점

(양식 1) 현·시정촌 연계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 협력금 등 지급 신청서 겸 계좌 이체 의뢰서 (필수)

-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법인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복수의 사무소를 소유하는 사업자여도 신청은 1 회에 한합니다.
- 이체 받는 계좌 명의는 신청자의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한합니다.

(양식 2) 별지(부표) (복수의 사무소를 소유한 사업자만 첨부)

(양식 3) 첨부대지(이하의 자료로 A4 가 아닌 것을 붙임. 단 A4 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능.)

첨부 자료 1 긴급사태조치에 동반한 시설 사용정지 등의 요청 이전부터 영업활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는(1),(2), 개인 사업자는(1),(2),(3)의 서류가 모두 필요)

(1) 영업활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서류

	법인	개인 사업자
설립 후 결산기를 맞고 있는 경우	다음의 ①, ②의 두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① 법인 현민세·법인사업세 신고서 등의 사본 ② 최근의 경리장부의 사본 ※1	다음의 ①, ②의 두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① <u>가지고 계신</u> 녹색신고 결산서 또는 수지내역서 등의 사본 ② 최근의 경리장부의 사본 ※1
개업한지 얼마 안된 경우 ※2	다음의 ①, ②의 두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① 법인설립설치 신청서의 사본 ② 최근의 경리장부의 사본 ※1	①, ② 두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① 개업 신청서, 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서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최근의 경리장부의 사본 ※1

※1 2020 년 1 월부터 4 월 22 일간 휴업 전 일수를 포함한 월말 마감 장부(한 달 분, 또는 휴업 전 일수의 일수 계산표 등)

※2 설립 후 결산기나 신고 시기를 맞이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2) 점포명이 들어간 사업소의 외경 및 내부의 사진(휴업 대상이 된 모든 사업소)

(3) (개인 사업자만 해당) 본인 확인 서류(사본 가능, 이하의 사항 중 하나가 해당)

운전면허증, 여권, 보건증의 사본

첨부 자료 2 휴업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예) 휴업을 알리는 HP, 가게 앞 포스터, 전단지, DM 등(사본이나 사진)

※ 휴업하는 사업소의 명칭이나 상황(휴업 시간, **영업시간의 변경**), 택배 또는 테이크 아웃은 **점내 식사 중지 영업 안내**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첨부 자료 3 이체 받는 계좌와 계좌명의를 알 수 있는 통장 사본(좌우 양면에 걸친 페이지로) 신청자의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한합니다.

첨부 자료 4 (지정 관리자에 한함) 지정 관리료나 운영보조 등의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국가나 현, 시정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수지계획서)의 사본 등

(양식 4) '체험시설'요건 확인 체크리스트(지원금 대상의 '체험시설'의 신청자만) 및 그 첨부 서류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현·시정촌에서 본 사업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첨부서류에는 **신청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반드시 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지워지는 펜은 불가능)